

【붙임】 작성 참고

(1-1)	제목 : 식품위생 보장에 도움 안되는 식품위생교육
(1-2)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3) 현장의 목소리(사례) : 아래와 같이 서술형, 자세히 작성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1회 각 사업장별 신규교육과 위생 보수교육으로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교육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날마다 생존과 싸우고 있는 저희 같은 소기업이 전혀 도움도 안되는 교육을 무조건 돈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사업장내에 위생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며 교육시에도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40~60대 정도의 여성인력들은 인터넷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도 안돼요.

그러니 결국 회사에서는 점포수만큼의 교육을 교육비를 다 내고 받아야하는데 1인당 온라인 교육 18천원, 오프라인 교육 20천원으로 30개 점포만 운영에도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오프라인교육은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어 안되니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하고, 그것도 대표가 온라인 교육을 수십회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며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1-4) 현황 및 문제점 → (2-3) 현장의 목소리 요약 작성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며 종사자 연령대가 고령임
 -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해당 근무자를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렵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 해도 고령의 종사자들은 수강하기 어려움
 - 법적으로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나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 없어 개별 기업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며, 미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함
 - 교육 내용 또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이 떨어짐

(1-5) 건의사항

- 현행 법적 강제사항인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 부여
 - 최근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기업들도 식품 위생·안전의 중요성 및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식품 위생과 안전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이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강제하기보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자율화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1-6) 관련법령 (※ 해당 법률, 시행령, 규칙, 규정, 지침 등)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